

## 국제교류자문위원회규정

제정 2019. 10.

개정 2024. 01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국제화, 국제교류, 외국인 유학생 입학관리 및 모집을 위한 마케팅 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고,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교류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 및 임무)** ①위원회는 국제교류처장, 국제교류부처장, SolBridge 국제경영대학장, Endicott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장 및 내·외부 전문가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은 제4조 각호에 관련된 국제교류업무와 관련하여 부총장을 자문한다.(개정2024.01.18.)

**제3조 (임기)**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 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4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.

- 외국인 유학생 입학 및 모집을 위한 마케팅 방향 설정과 실천계획의 수립
- 국제교류를 위한 기본 방향의 제시와 실천계획의 수립
- 해외캠퍼스 관리
- 기타 국제화 및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총장이 자문하는 사항

**제5조 (회의)** ①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6조 (연구위원)** 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7조 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처(글로벌센터)에서 관장한다.

**제8조 (기타)**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1.18.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)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